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영실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 694 발의년월일 : 2019년 5월 24일

발 의 자:이영실, 김경영, 이병도,

봉양순, 김용연, 김혜련,

김화숙, 이정인, 오현정,

김동식, 서윤기, 김소양 의원

(12명)

1. 제안이유

- 기존 성별임금격차 개선과 관련된 법·제도는 있으나 현장에서 실효 성이 없다는 의견과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 는 상황으로 시의성 있는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
- 또한 현재 우리사회 노동의 성 불평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개선 의 필요성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, 이에 성평등한 여성일자 리 정책 추진의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제도적 지원체계 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
- 따라서 성별 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,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 보호 등 서울시의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'성평등노동정책 추진체계'를 만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○ 한편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권리 보호를 위한 '서울특별시 직장맘지 원센터'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그 설치·운영 근거를 동 조례에 규정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45조 ~ 안 제47조)
- 나. 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48조)
- 다.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 49조 ~ 안 제55조)
- 라. 차별조사관을 둘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(안 제5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양성평등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4호나목 중 "일가족양립"을 "일·생활 균형"으로 한다.

제18조의 제목 "일·가족 양립 지원"을 "일·생활 균형 지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"을 "일과 생활을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직장맘지원센터 지원 확충 및 활성화

제7장의 제목 "보칙"을 "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"로 한다.

제7장제45조 및 제46조를 각각 제57조 및 제58조로 하고, 제45조부터 제47조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5조(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제18조제8호에 따라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 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·생활 균형을 위하여 서울특 별시 직장맘지원센터(이하 "직장맘지원센터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- ② 직장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- 1.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, 교육, 홍보 등 지원사업
- 2.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
- 3. 일·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
- 4.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
-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6조(직장맘지원센터에 대한 지원) 시장은 직장맘지원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직장맘지원센터의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있다.

제47조(지도·점검 등) 시장은 직장맘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16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도·점검 등을 할 수 있다.

제7장제47조를 제59조로 한다.

제8장(제48조부터 제56조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장 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 및 추진체계

- 제48조(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) ①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하여 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성평등노동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
 - 2. 성평등노동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
 - 3. 성평등노동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향
 - 4. 성평등노동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사항
 - 가.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
 - 나. 성평등 노동실태 관련 조사·연구 및 교육
 - 다. 고용상 성차별 예방 및 개선
 - 라. 그 밖의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
- 제49조(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성평등노동정책에 관한 주 요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(이하 "격차개선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격차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 - 1. 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- 2.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, 인식개선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
 - 3. 서울시, 산하기관, 민간위탁기관 평가지표 반영 및 성별임금격차 개선

촉진에 관한 사항

- 4. 민간기업의 성평등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성평등노동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50조(격차개선위원회 구성) ① 격차개선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, 부위원장은 성평등노동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.
 -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·노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성평등노동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 -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성평등노동 정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
- 제51조(격차개선위원회 위원의 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다.
- 제52조(격차개선위원회 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- 1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
- 2.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
- 3. 제54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
- 4. 사망, 국외이주,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- 5.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
- 6.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제53조(격차개선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54조(격차개선위원회 회의) ① 격차개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 - ②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

- 시·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격차개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·조정에서 제척된다.
- 1.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- 2.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
- 3.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
- ⑦ 위원은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·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.
- 제55조(격차개선위원회 분과위원회) ① 격차개선위원회에는 소관사항을 분 야별로 연구·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분과위원회는 격차개선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2.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분과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- ④ 분과위원회의 세부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56조(차별조사관) ① 시장은 성평등 고용 및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차별 조사관(이하 "조사관"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 - 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워으로 채용한다.
 - 1.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한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 - 2. 노동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·연구소·민간기업의 노무부서· 노동조합 등 법인 및 단체에서 여성정책 또는 노동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
 - 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 기관의 「근로기준법」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등 노동관계법, 성평등 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.
 - 1.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
 - 2. 자치구(시의 위임사무와 서울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.)

- 3. 시 산하 공사·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
- 4.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
- ④ 조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. 조사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⑤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57조 앞에 "제9장 보칙"을 삽입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제49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안 제5조(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) 제5조(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) ① (생략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3. (생 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성평등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사항 가. (생략)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돌봄 분담과 일가족양립 나. ----- 일 · 생활 균 기반 구축 형 ----다. ~ 아. (생 략) 다. ~ 아. (현행과 같음) ③ ~ ⑤ (생 략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제18조(일 · 가족 양립 지원) 시장 제18조(일 · 생활 균형 지원) ----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----- 일과 생활을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-----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|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1. ~ 5. (생략)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일 · 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6. 일·생활 균형-----및 서비스 지원 7. (생략) 7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8.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지원 확충 및 활성화

<u>8</u>. (생 략) 제7장 보칙

<신 설>

9. (현행 제8호와 같음) 제7장 <u>서울특별시</u> 직장맘지원센터

제45조(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
제18조제8호에 따라 여성의 노
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
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·생
활 균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
직장맘 지원센터(이하 "직장맘
지원센터"라 한다)를 둘 수 있
다.

- ② 직장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- 1.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, 교육, 홍보 등 지원사업
- 2.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 원사업
- 3. 일·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사 회문화 조성사업
- 4.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
-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6조(직장맘지원센터에 대한 지 원) 시장은 직장맘지원센터의

<u>제45조</u>・<u>제46조</u> (생 략)

<u>제47조</u>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직장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수 있다.

제47조(지도·점검 등) 시장은 직 장맘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 여 필요한 경우「서울특별시 행 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」제16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 하여 지도·점검 등을 할 수 있 다.

<u>제57조</u>·<u>제58조</u> (현행 제45조 및 제46조와 같음)

<u>제59조</u> (현행 제47조와 같음) <u>제8장 성평등노동정책</u> 종합계획 및 추진체계

제48조(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) ①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하여 성평등 노동정책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 하여야 한다.

② 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

어야 한다.

- 1. 성평등노동정책의 기본방향및 추진 목표
- 2. 성평등노동정책의 추진과제 와 추진방법
- 3. 성평등노동정책 추진과 관련 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향
- 4. 성평등노동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사항 가.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

<u>선</u>

- 나. 성평등 노동실태 관련 조 사·연구 및 교육
- <u>다. 고용상 성차별 예방 및 개</u> 선
- 라. 그 밖의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

제49조(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설치 및 기능) ① 성평등노동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(이하 "격차개선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② 격차개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<u><신 설></u>

- 1. 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 수립에 관한 사항
- 2.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, 인식개선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
- 3. 서울시, 산하기관, 민간위탁 기관 평가지표 반영 및 성별 임금격차 개선 촉진에 관한 사항
- 4. 민간기업의 성평등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성평등노동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50조(격차개선위원회 구성) ① 격차개선위원회는 위원장 2명 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 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, 부위원장은 성평등노동정책 업 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
 -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·노동 등 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 상 공무원 5명 이내로 하고, 위

무원으로 한다.

<신 설>

촉직 위원은 성평등노동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 는 성평등노동정책 업무 담당과 장이 된다.

제51조(격차개선위원회 위원의 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2조(격차개선위원회 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- 1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
- 2.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 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 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
- 3. 제54조제6항에도 불구하고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4. 사망, 국외이주, 장기간의 심

- 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 기 어려운 경우
- 5.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 석하지 아니한 경우
- 6.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
- 제53조(격차개선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54조(격차개선위원회 회의) ① 격차개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 다.
 - ②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 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 다.

-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심의안건 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 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격차개선위원회의 회의는 재 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.
-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 의 심의·조정에서 제척된다.
- 1.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 계가 있는 경우
- 2.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
- 3.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

관계에 있는 경우

⑦ 위원은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·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.

제55조(격차개선위원회 분과위원 회) ① 격차개선위원회에는 소 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·검토하 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· 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같다.
- 1. 분과위원회는 격차개선위원 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한다.
- 2.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 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 다.
- ③ 분과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- ④ 분과위원회의 세부운영은 규 칙으로 정한다.

제56조(차별조사관) ① 시장은 성

평등 고용 및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차별조사관(이하 "조사 관"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 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3 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 용한다.

- 1.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 격증 소지한 후 관련 분야에 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2. 노동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· 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·연구 소·민간기업의 노무부서·노동 조합 등 법인 및 단체에서 여 성정책 또는 노동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
- 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 기관의 「근로기준법」,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등 노동관계법, 성평등 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있다.
- 1.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
- 2. 자치구(시의 위임사무와 서

- 울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.)
- 3. 시 산하 공사·공단 및 출자· 출연기관
- 4.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
- ④ 조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. 조사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⑤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9장 보칙

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9조(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설 치 및 기능), 제50조(격차개선위원회 구성), 제55조(격차개선위원회 분과위원회)에 따라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운영비용 발생
 - * 같은 조례안 제7장(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)의 제45조(설치 및 기능), 제46조 (직장맘지원센터에 대한 지원) 및 제56조(차별조사관)의 경우 기 시행중인 사업으로 별도의 비용 발생치 않아 비용추계 제외(붙임 참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(제3조제1항제1호)
- 나. 추계결과 = 152,500천원
-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152,500천원으로 연평균 30,500천원임
- 추계의 전제
- 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
- 물가상승률 미반영
-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연간 운영비 지원단가는 서울시(동일부서)에서 운영하는 유사 규모의 위원회 운영예산을 참고하되 위원은 20명(당연직 3명, 위촉직17명)으로 가정

○ 상세 비용추계 결과

						(인	<u>게 • 센턴)</u>
구분	연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합계
세입	_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 위원회 운영비 (조례안 제49조, 제50조, 제55조)	30,500	30,500	30,500	30,500	30,500	152,500
	소계(b)	30,500	30,500	30,500	30,500	30,500	152,500
□총 비용(b-a)		30,500	30,500	30,500	30,500	30,500	152,500

(다의 · 처위)

-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운영비(≒152,500천원)
-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운영비
 - = $\sum_{i=1}^{5}$ (연간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운영비)i
 - * i = 비용추계 연차(2020년~2024년)
- 연간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운영비
 - = 전체회의 참석수당 + 분과회의 참석수당 + 위원회 운영 경비
 - = (150,000원*17명*2회) + (150,000원*17명*8회) + (500,000원*10회)
 - = 5,100,000원 + 20,400,000 + 5,000,000원
 - = 30,500,000원
 - ※ 참고) 성평등위원회 예산 편성내역(2019년 기준)
 - : 성평등위원회 운영 37,800,000원
 - · 전체회의 참석수당 150,000원*26명*2회 = 7,800,000원
 - · 분과회의 참석수당 150,000원*20명*8회 = 24,000,000원
 - · 위원회 운영 준비 등 500,000원*12회 = 6,000,000원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정책조사팀장 여차민

주 무 관 채소영

28 02-2180-7944

e-mail: liz1998@seoul.go.kr